

# 2021년 정책보험 운영 계획 (손사법인 전달 자료)

(정책보험지급팀/2021.2.23)

## I 가축 상품개정사항

### 1 상품

□ 일부 비용손해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개선

○ 보험자를 위하여 지출하는 성격의 비용에 대해 자기부담금 적용 제외

현행	개정
제8조(보험금 등의 지급한도) ① (생략) ② 제3조(보상하는 손해)제2항의 비용손해 중 손해방지비용, 대위권 보전비용 및 잔존물 보전비용은 제9조(지급보험금의 계산)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지급합니다. ③ (생략)	제8조(보험금 등의 지급한도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3조(보상하는 손해)제2항의 비용손해 중 손해방지비용, 대위권 보전비용 및 잔존물 보전비용은 제9조(지급보험금의 계산)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지급합니다. 단, 이 경우에 제9조(지급보험금의 계산) 제1항 또는 제2항의 자기부담금은 차감하지 않습니다. ③ (현행과 같음)

□ 폭염의 특성을 반영한 보상기준 명확화

○ 특보가 며칠동안 연속하여 발생함에 따라 야기되는 민원 방지

현행	개정
제2조(보상하는 손해) ①~③ (생략)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폭염 손해는 폭염특보 발령 전 24시간(1일)전부터 해제 후 24시간(1일)이내에 폐사되는 보험목적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. 다만, <del>화사기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며</del> , 폭염특보는 보험목적의 수용장소(소재지)에 발표된 해당 지역별 폭염특보를 적용합니다.	제2조(보상하는 손해) ①~③ (현행과 같음)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폭염 손해는 폭염특보 발령 전 24시간(1일)전부터 해제 후 24시간(1일)이내에 폐사되는 보험목적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. 다만, 폭염특보는 보험목적의 수용장소(소재지)에 발표된 해당 지역별 폭염특보를 적용하며 <u>보험기간 종료일까지 폭염특보가 해제되지 않을 경우 보험기간 종료일을 폭염특보 해제일로 봅니다.</u>

## 2

## 주요 인수개정 사항

### □ 가금(닭)

축종	현행	변경	기준가액	비고
닭	육계	육계	2,500원	
		육계(삼계)	1,750원	
	산란계	좌동	6,000원	
	종계	종계	10,000원	최대 15,000원
		종계(원종계)	20,000원	가입금액 자료 필수첨부
		종계(부화장)	280원	최대300원
	토종닭	좌동	4,600원	최대4,600원

### □ 양

과거 3년 손해율	현행	변경	
	자기부담율	마리당 가입금액	자기부담율
신규	20%	220,000원	20%
100% 이내			
150%이내	30%	210,000원	30%
200%이내		200,000원	
300%이내	40%	180,000원	40%
300%초과		140,000원	

□ 소, 돼지, 가금, 꿀벌 축종은 '20년도와 동일

□ 농기계종합보험, 풍수해보험은 상품개정 사항 없음

## II 손해사정 수수료 변경

### 1 농기계종합보험

#### □ 농기계손해 전손사고 변경(안)

○ (현행) 전손 시 50% ⇒ (변경) 전손 시 40%

현행	변경後
<p>2. 수수료 기준</p> <p>가. 화재, 폭발, 풍수재, <u>농기계(자차)</u> 등 재물 전손사고의 기본 보수는 상호합의에 의해 손해액 확정금액의 50%를 손해사정금액으로 하여 위 표에 의한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전손사고라함은 손해액 확정금액이 보험가액의 80%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. 다만, 동산에 대하여는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.</p>	<p>2. 수수료 기준</p> <p>가. 화재, 폭발, 풍수재 등 재물 전손사고의 기본 보수는 상호합의에 의해 손해액 확정금액의 50%<b>(다만, 농기계(자차)인 경우에는 손해액 확정금액의 40%로 하며 항공방제기는 제외한다.)</b>를 손해사정금액으로 하여 위 표에 의한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전손사고라함은 손해액 확정금액이 보험가액의 80%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. 다만, 동산에 대하여는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.</p>

#### □ 농기계 항공방제기 변경(안)

현행	변경後														
<p>[별표1] 재물(1종) 손해사정 수수료 기준</p> <p>4. 단순사고 수수료 기준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대상건</th> <th>기준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농기계종합보험 항공방제기</td> <td>66만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2. 수수료 기준 〈신설〉</p>	대상건	기준액	농기계종합보험 항공방제기	66만원	<p>[별표.1] 재물(1종) 손해사정 수수료 기준</p> <p>4. 단순사고 수수료 기준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대상건</th> <th>기준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농기계종합보험 <b>(드론)</b></td> <td>66만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2. 수수료 기준</p> <p><b>바. 농기계종합보험 항공방제기(무인헬기)는 아래와 같이 손해사정금액으로 적용한다.</b></p> <p><b>[아 래]</b>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내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보수기준</td> <td>시간당 50,000원(이동시간 포함) ※ 조사자 경력별 적용 없음</td> </tr> <tr> <td>교통비 및 숙박비</td> <td>[별표6] 여비·교통비 지급기준 준용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대상건	기준액	농기계종합보험 <b>(드론)</b>	66만원	구분	내용	보수기준	시간당 50,000원(이동시간 포함) ※ 조사자 경력별 적용 없음	교통비 및 숙박비	[별표6] 여비·교통비 지급기준 준용
대상건	기준액														
농기계종합보험 항공방제기	66만원														
대상건	기준액														
농기계종합보험 <b>(드론)</b>	66만원														
구분	내용														
보수기준	시간당 50,000원(이동시간 포함) ※ 조사자 경력별 적용 없음														
교통비 및 숙박비	[별표6] 여비·교통비 지급기준 준용														

## □ 농기계 자기신체사고 I, II 변경(안)

현 행	변 경 後												
<p>4. 단순사고 수수료 기준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대 상 건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기 준 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농기계보험 자기신체사고 전 건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0만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대 상 건	기 준 액	농기계보험 자기신체사고 전 건	50만원	<p>4. 단순사고 수수료 기준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대 상 건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기 준 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농기계보험 자기신체사고 I 「부상」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0만원</td> </tr> <tr> <td>농기계보험 자기신체사고 I 「후유장해, 사망」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66만원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자기신체사고II는 2. 수수료 기준 “나” 항 적용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대 상 건	기 준 액	농기계보험 자기신체사고 I 「부상」	50만원	농기계보험 자기신체사고 I 「후유장해, 사망」	66만원	자기신체사고II는 2. 수수료 기준 “나” 항 적용	
대 상 건	기 준 액												
농기계보험 자기신체사고 전 건	50만원												
대 상 건	기 준 액												
농기계보험 자기신체사고 I 「부상」	50만원												
농기계보험 자기신체사고 I 「후유장해, 사망」	66만원												
자기신체사고II는 2. 수수료 기준 “나” 항 적용													

### ○ 담보별 경합시 인정 기준

구 분	수 수 료
농기계손해 + 자기신체사고 I (부상 8급이하)	농기계손해수수료만 지급 (자기신체사고 수수료 없음)
농기계손해 + 자기신체사고 I (부상 8급이상)	농기계손해수수료와 자기신체사고 수수료 66만원 각각 지급
농기계손해 + 자기신체사고 I (공제금이 있는 사고) 상해급수무관	농기계손해수수료와 자기신체사고 수수료 66만원 각각 지급
농기계손해 + 자기신체사고 II	농기계손해수수료와 대인배상 수수료 각각 지급
농기계손해 + 대인배상	농기계손해수수료와 대인배상 수수료 각각 지급
농기계손해+자기신체사고 I (8급이하 또는 8급이상) + 대인배상	상기 기준에 의한 수수료를 각각 지급
농기계손해+자기신체사고 II+대인배상	농기계손해수수료와 대인배상 수수료 각각 지급

※ 자기신체사고II는 한도가 1억이므로 평가 후 1억이 초과하여도 손해액은 최고 1억으로 한다.

## 2

## 가축재해보험

□ 가축축사화재 사고 변경(안) : 손해액의 70% ⇒ 손해액의 80% 적용

현행	변경後
2. 수수료 기준 라. 가축재해보험은 손해액의 70% 상당액을 손해사정 금액으로 적용하며, (이하 생략)	2. 수수료 기준 라. 가축재해보험은 손해액의 70%(단, <u>축사특약은 손해액의 80%</u> )상당액을 손해사정 금액으로 적용하며, (이하 생략)

## III

## 업무평가 관련 사항

□ 전문성 위주의 평가(안) 마련

- 농기계미결보유율, 처리율, 현장보고서 3일내 제출율, 평균처리일수가 각각 20점씩으로 순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평가항목 설정
- 평가점수가 낮을 경우 군 강등 조치 등 위임 중지

## IV

## 전달사항 및 당부사항

□ 상반기 정책보험 교육계획

- 농기계 : 3월 중 지역별 로타베이터, PTO 집중 교육 및 대인, 자손 손해평가 매뉴얼 교육 등 지침 전달
- 가축 : 폭염 사고 전 폭염대응반 구성 및 매뉴얼 교육

## □ 모바일 보상 시스템 오픈

- '21. 4월 가축질병치료보험 및 가축 소보험 모바일 보상 시스템 오픈

## □ 주요 업무관련 사항

- 늦장 조사하지 말고, 신속한 현장 조사 실시
- 농기계외의 경우 사고와 파손부위 인과관계 철저 확인
- 정책보험 미결 관리 지점별 팀장 또는 소장 주관하에 철저 관리 당부
- 개인별 보고서 질 향상 위한 노력 당부